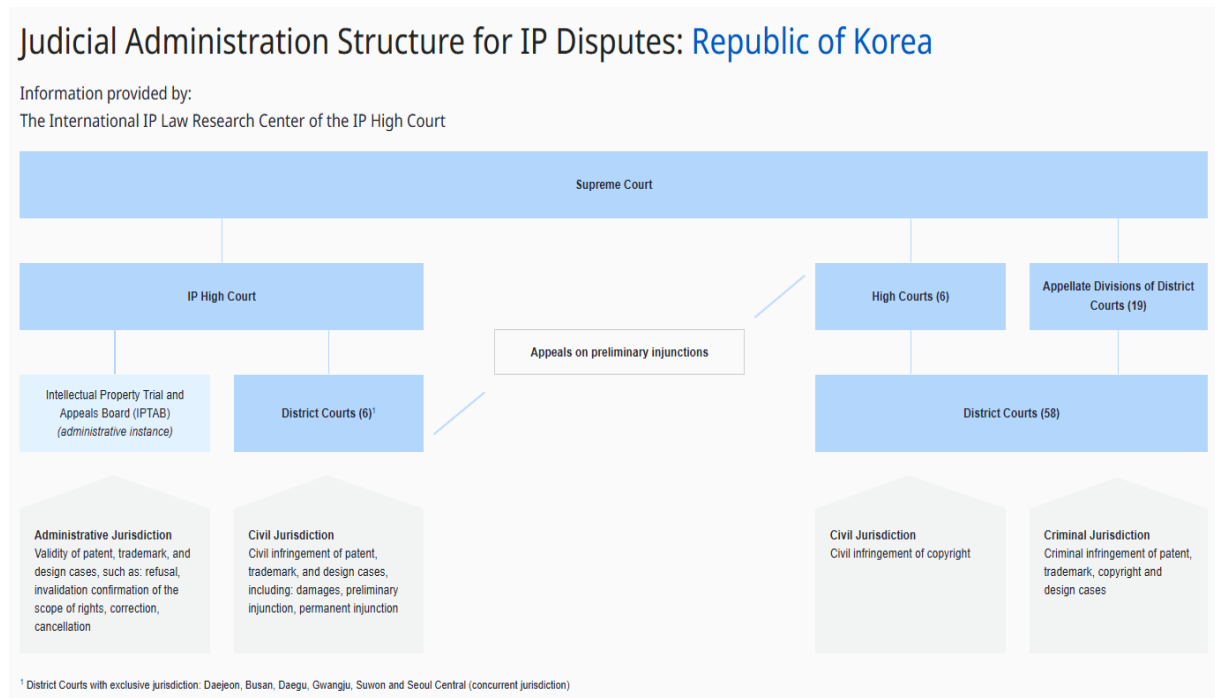


# 지식재산권 분쟁의 사법행정체계: 대한민국<sup>12</sup> (JUDICIAL ADMINISTRATION STRUCTURE FOR IP DISPUTES: REPUBLIC OF KOREA)



## 1. 지식재산권 분쟁에 관한 준사법적 행정기관(Quasi-judicial administrative bodies for IP disputes)

대한민국 지식재산처(MOIP)는 행정기관으로, 2025 년 10 월에 특허청에서 국무총리실 소속 지식재산처로 승격된 바 있다. 지식재산처는 다양한 형태의 지식자산을 통합 관리하여

1 본 자료는 특허법원 국제지식재산권법연구센터(주 책임자: 연구위원 부장판사 박태일, 연구원 김용주)에 의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 본 글은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한 우리나라의 사법행정체계에 관하여 해외 독자들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관련 용어들을 다음과 같이 사용한다.

- 가. 특허심판원의 심결 / 결정: IPTAB's decision
- 나. 그 외 행정심판기관의 심결 / 결정 / 판정: administrative decision
- 다. 법원의 판결: judgment
- 라. 법원의 결정 / 명령: judicial decision / order
- 마. 특허심판원을 포함한 행정심판기관의 심판: administrative trial

미래를 선도하는 산업혁신 기반을 마련하고, 지식재산권의 창출과 활용, 보호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되었다.<sup>3</sup>

특허심판은 산업재산권(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품종보호)의 발생·변경·소멸 및 그 권리범위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특별행정심판을 말하며, 특허심판(거절결정 불복심판, 무효심판, 권리범위 확인심판 등)은 지식재산처 소속 특허심판원에서 하고 있다.<sup>4</sup>

특허심판은 직무상 독립된 3인 또는 5인의 심판관 합의체가 공정하고 신속하게 특허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이다.<sup>5</sup> 원칙적으로 심판은 3명 또는 5명의 심판관으로 구성되는 합의체가 한다.<sup>6</sup> 특허심판장은 심판사건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데, 심판장은 심판이 청구되면 심판청구서 부분을 피청구인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며, 심판에 관하여 당사자를 심문할 수 있다.<sup>7</sup> 이러한 점에서 특허심판원은 행정기관 내부에 설치되어 있으나, 절차 운영 면에서는 상당한 정도의 준사법적 성격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sup>8</sup>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결에 대한 소 및 특허취소신청서·심판청구서·재심청구서의 각하결정에 대한 소는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sup>9</sup> 법원은 소가 제기된 경우에 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판결로써 해당 심결 또는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sup>10</sup> 심판관은 특허법 제 189 조 제 1 항에 따라 심결 또는 결정의 취소판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다시 심리를 하여 심결 또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sup>11</sup>

저작권 분야에는 특허심판권과 같은 별도의 행정심판기관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 관련 분쟁에 대해 조정 기능을 수행하며, 이는 재판 전 또는 재판 외 분쟁해결 수단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sup>12</sup> 조정은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에서 당사자들의 이익이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sup>13</sup> 조정 결과 당사자 간에 합의가 성립하거나, 직권조정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으면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sup>14</sup>

한편, 지식재산권에 대한 국경조치와 관련하여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역위원회는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에 대한 불공정무역행위를 조사할 수 있다.<sup>15</sup>

---

3 지식재산처 홈페이지, 설립목적, <https://www.moip.go.kr/ko/kpoContentView.do?menuCd=SCD0200441>.

4 특허심판원 홈페이지, 특허심판제도 안내, <https://www.kipo.go.kr/ipt/iptContentView.do?menuCd=SCD0400062>.

5 특허심판원 홈페이지, 특허심판제도 안내, <https://www.kipo.go.kr/ipt/iptContentView.do?menuCd=SCD0400062>.

6 특허법 제 146 조 제 1 항.

7 특허법 제 145 조 제 2 항, 특허법 제 147 조.

8 특허심판원 홈페이지, 특허심판제도 안내, <https://www.kipo.go.kr/ipt/iptContentView.do?menuCd=SCD0400062>.

9 박태일, 2026 년 법관연수 강의자료-지식재산권 소송실무, 6-15 면; 특허법 제 186 조 제 1 항.

10 특허법 제 189 조 제 1 항.

11 특허법 제 189 조 제 2 항.

12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전자조정시스템> 제도안내> 조정의 개념 및 효력,

<https://adr.copyright.or.kr/web/content.do?proFn=9110000>.

13 저작권법 제 117 조 제 2 항.

14 저작권법 제 117 조 제 5 항.

15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 4 조 제 1 항.

관세청 또한 ‘관세법’에 따라 세관의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에 대한 통관보류 조치를 수행하고 있다.<sup>16</sup>

그 밖에 조정기관으로 지리적표시심판위원회, 품종보호심판위원회,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 등이 존재한다.

## 2. 지식재산권 분쟁에 관한 사법행정(Judicial administration for IP disputes)

### 2.1. 지식재산권 분쟁에 관한 법원(Courts for IP disputes)

#### <법원의 개요>

대한민국은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으로 구성된 3 단계 법원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sup>17</sup>

대법원은 최종심으로, 서울에 위치한다.

전문 기능을 수행하는 법원 중 특허법원은 고등법원 수준이다. 고등법원은 지방법원 판결에 대한 항소를 처리하며,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수원 의 6 대 주요 도시에 위치해 있다.

전국에는 18 개의 지방법원이 있으며, 이들은 1 심으로서 단독 판사가 있는 단독부 또는 합의부 사건을 담당한다. 지방법원 합의부는 보다 복잡하거나 중대한 사건을 심리하고, 또한 단독 판사가 담당한 1 심 사건의 항소심(항고심) 역할도 수행한다. 지방법원은 각자의 관할 구역 내에 지원을 둘 수 있다. 현재 전국에 42 개의 지원이 있다.<sup>18</sup>

#### <관할>

대한민국의 지식재산 분쟁에 대한 사법 구조는 사건 유형에 따라 구분된다.<sup>19</sup> 이는 크게 IP 민사소송, IP 형사소송, IP 행정소송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IP 민사소송은 민사본안소송과 가처분소송으로 나뉜다. 민사본안소송에는 침해금지청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신용회복 또는 명예회복조치청구소송, 지식재산권의 이전·설정 또는 말소청구소송 등이 있다.

IP 민사본안소송을 좀 더 자세히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

16 관세법 제 235 조.

17 <https://www.wipo.int/patent-judicial-guide/en/full-guide/republic-of-korea/8.3.1>.

18 <https://www.scourt.go.kr/judiciary/organization/district/index.html>.

19 이하 IP 소송의 종류에 대해서는 한규현, 2026 법관연수 강의자료 55 면부터 그 이하 내용 참조.

- 침해금지청구소송 :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에게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구하는 소송
- 손해배상청구소송 : 지식재산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
- 신용회복 또는 명예회복조치청구소송 : 산업재산권 침해로 업무상 신용을 실추하게 함을 원인으로 하거나 또는 고의·과실로 인한 저작자의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업무상의 신용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구하는 소송
- 지식재산권 이전·설정 또는 말소청구소송 : 지식재산권의 이전·설정 또는 말소를 구하는 소송
- 직무발명보상금청구소송 :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을 구하는 소송
- 부당한 가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 부당한 가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소송

아울러 가처분소송은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저작권 등과 관련한 침해금지 가처분소송을 의미한다.

IP 행정소송은 심결 또는 결정에 대한 소 및 그 이외의 행정소송<sup>20</sup>을 포함한다.

IP 행정소송 중 심결 또는 결정에 대한 소는 다음과 같다.

1) 특허심판원의 심결 또는 결정에 대한 소

발명,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에 관한 특허심판원의 심결 또는 각하결정에 관한 소를 의미한다.(특허법 제 186 조 제 1 항, 실용신안법 제 33 조, 디자인보호법 제 166 조 제 1 항, 상표법 제 162 조)

2) 지리적표시심판위원회의 심결에 대한 소

지리적표시에 관한 지리적표시심판위원회의 심결에 대한 소를 의미한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 54 조 제 1 항)

3) 품종보호심판위원회의 심결 또는 결정에 대한 소

품종에 관한 품종보호심판위원회의 심결 또는 결정에 대한 소를 의미한다.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 103 조 제 1 항)

IP 형사소송은 특허법 위반, 실용신안법 위반, 디자인보호법 위반, 상표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저작권법 위반 등 형사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소송이다.

---

<sup>20</sup> 특허법 제 190 조의 보상금에 관한 불복의 소, 특허법 제 190 조의 대가에 관한 불복의 소, 그 밖의 지식재산처장 등의 처분에 대한 소가 있다.

## 1. IP 민사본안소송 (1) :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품종보호권(“특허권등”)에 관한 소

### 1) 제 1 심

- 전속관할 : 고법 소재지 6 개 지법(서울중앙,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수원)  
전속관할로 하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선택적 전국 중복관할로 한다.<sup>21</sup>
- 특허권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의 재량이송 : 특허권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를 관할하는 법원은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사소송법 제 2 조부터 제 23 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방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sup>22</sup>

### 2) 항소심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sup>23</sup>

### 3) 상고심 : 대법원

## 2. IP 민사본안소송 (2) : 특허권등을 제외한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

### 1) 제 1 심

- 중복관할 : 전국 18 개 지방법원 또는 42 개의 지원 합의부 관할이다.<sup>24</sup> 다만, 고법 소재지 6 개 지법 중복관할이 인정된다.<sup>25</sup>
- 특허권등을 제외한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의 재량이송 :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민사소송법 제 24 조 제 1 항에 따른 관할법원(서울중앙,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지법)으로 이송할 수 있다.<sup>26</sup>

### 2) 항소심

고등법원 및 지법 항소부가 항소심을 처리한다.

### 3) 상고심 : 대법원

---

21 민사소송법 제 24 조 제 2, 제 3 항.

22 민사소송법 제 36 조 제 3 항.

23 법원조직법 제 28 조의 4 제 2 호.

24 <https://www.scourt.go.kr/judiciary/organization/district/index.html>.

25 민사소송법 제 24 조.

26 민사소송법 제 36 조 제 1, 제 2 항.

### 3. IP 가처분소송

심급구조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 합의부 - 고등법원 - 대법원 순이다.

### 4. IP 형사소송

심급구조는 지방법원(지원 포함) 합의부 또는 단독 - 고등법원 또는 지방법원본원  
항소부 - 대법원 순이다.

### 5. IP 행정소송

#### 1) 행정소송 (1) : 심결 또는 결정에 대한 소

심급구조는 특허법원 - 대법원 순이다.

#### 2) 행정소송 (2) : 심결 또는 결정에 대한 소 이외의 행정소송

심급구조는 서울행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행정재판부 - 고등법원 - 대법원 순이다.

무역위원회의 지식재산권 관련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판정에 대해서는 서울행정법원  
또는 대전지방법원에 행정소송으로 불복할 수 있다.

## 2.2. 지식재산권 분쟁을 담당하는 법원의 구성원 (Members of courts for IP disputes)

### 1. 판사

대법원은 심급제도의 최고기관으로서 상고사건과 재항고 사건을 최종심으로 판단하고,  
1 회기의 재판으로 끝나는 소위 단심 사건의 관할법원으로서 사건을 담당한다.<sup>27</sup>

대법원의 심판권은 대법관 전원의 3 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행사하며,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된다.<sup>28</sup> 다만, 대법관 3 명 이상으로 구성된 부(部)에서 먼저 사건을 심리하여

---

27 대법원 홈페이지> 대법원 소개 > 대법원 기능,  
<https://www.scourt.go.kr/supreme/composition/duty/duty01/index.html>.

28 법원조직법 제 7 조 제 1 항.

의견이 일치한 경우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sup>29</sup>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부에서 재판할 수 있다.<sup>30</sup>

대한민국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sup>31</sup> 대법관의 임기는 6 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sup>32</sup> 현재 대법관의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 명이나, 법원조직법의 개정에 따라 26 명으로 확대되었고, 이는 2028 년부터 시행 예정이다.<sup>33</sup>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20 년 이상 다음 각 호<sup>34</sup>의 직에 있던 45 세 이상의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sup>35</sup>

대법원은 3 개 특별부(대법관 4 인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IP 행정 상고사건을, 3 개의 민사부에서 IP 민사 상고사건과 재항고 사건을, 3 개의 형사부에서 IP 형사 상고사건을 담당하고 있다.<sup>36</sup>

대법관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지식재산권 전담조 재판연구관 6 인과 기술조사관 6 인이 근무하고 있다.<sup>37</sup>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판사는 법관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받아 대법원장이 임명한다.<sup>38</sup> 판사의 임기는 10 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sup>39</sup> 판사는 5 년 이상 위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임용하는데, 재판연구원 제도가 시행된 이후에 임용된 판사 가운데에는 재판연구원 경력을 지닌 경우도 많다.

특허법원은 과학, 공학 등을 전공했거나 다른 법원에서 지식재산권 관련 사건을 경험한 판사들이 근무하고 있다.<sup>40</sup> 특허법원 판사의 특허법원 재직기간은 일반 법원보다 대체로 길어지는 경향이 있다.<sup>41</sup> 재판부 구성을 살펴보면, 특허법원에는 5 개의 재판부가 있다. 각 재판부는 심결취소사건과 민사항소사건을 담당한다. 심결취소사건 재판부는 제 1~5 부,

---

29 1. 명령 또는 규칙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명령 또는 규칙이 법률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0 법원조직법 제 7 조 제 1 항.

31 헌법 제 104 조.

32 헌법 제 104 조.

33 법원조직법 제 4 조 제 2 항.

34 1. 판사·검사·변호사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4 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35 법원조직법 제 42 조 제 1 항.

36 한규현, 2026 년 법관연수강의자료-지식재산권 소송실무, 79 면.

37 한규현, 2026 년 법관연수강의자료-지식재산권 소송실무, 79 면.

38 법원조직법 제 41 조 제 3 항.

39 법원조직법 제 45 조 제 3 항.

40 <https://www.wipo.int/patent-judicial-guide/en/full-guide/republic-of-korea/8.3.2>.

41 <https://www.wipo.int/patent-judicial-guide/en/full-guide/republic-of-korea/8.3.2>.

민사항소사건 재판부는 제 21 부~제 25 부로 표시된다. 또한 특별부로 제 11 부와 제 31 부가 있다. 재판부는 부장판사 1 명과 구성원 판사 2 명의 3 인 합의체로 구성되고, 위 3 인의 합의로 판결한다. 각 재판부에는 기술심리관·조사관, 참여사무관, 참여주무관, 속기사 및 보안관리 대원이 소속되어 있다.<sup>42</sup>

서울고등법원에서는 2 개 재판부(민사 4 부, 민사 5 부)에서 특허권등을 제외한 나머지 IP 민사본안항고사건과 가처분 항고사건을 담당하고 있다.<sup>43</sup>

특허권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민사본안사건의 전국적인 관할을 가지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00% 지식재산권 사건만을 담당하는 전담부(제 60, 61, 62, 63 부)를 두고 있다.<sup>44</sup> 제 60 부는 주로 관련 신청사건을 전담하는 신청합의부이고, 제 61, 62, 63 부는 민사본안사건을 전담하여 처리하는 합의부이다.

이 외에도 특허권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민사본안사건의 전속관할 법원들을 비롯하여 각급 법원(지원)에 지식재산권 전담 재판부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지식재산권 전담 형사재판부가 설치되어 있는 법원도 다수 있다.

## 2. 기술심리관·조사관

### <기술심리관>

기술심리관은 특허권, 실용신안건에 관한 심결취소소송에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재판부의 자문에 응하고,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준비절차 및 변론절차에 참가하며, 재판부의 허가를 얻어 소송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거나 재판부의 합의과정에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sup>45</sup>

현재 특허법원에는 5 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지식재산처 심사관 또는 특허심판원 심판관 중에서 법원공무원(4 급, 서기관)으로 임용된 기술심리관과 일반임기제공무원(연봉등급 5 호, 사무관 대우)으로 임용된 기술심리관이 복무하고 있다.<sup>46</sup> 기술심리관은 기계, 전기, 화학, 약학, 전자통신, 농업 등 다양한 과학·기술 분야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받은 전문가들이다.<sup>47</sup> 특허법원에는 기술심리서기관 15 명, 기술심리사무관 2 명이 배치되어 있다.<sup>48</sup>

### <기술조사관>

---

42 특허법원 소개책자(구버전), 8 면.

43 한규현, 2026 년 법관연수강의자료-지식재산권 소송실무, 79 면.

44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 소개, <https://seoul.scourt.go.kr/jibubmgr/trial/new/TrialList.work>.

45 특허법원 소개책자(구버전), 18 면.

46 특허법원 홈페이지, [https://patent.scourt.go.kr/patent/intro/intro\\_03/group\\_01/index.html](https://patent.scourt.go.kr/patent/intro/intro_03/group_01/index.html).

47 특허법원 홈페이지, [https://patent.scourt.go.kr/patent/intro/intro\\_03/group\\_01/index.html](https://patent.scourt.go.kr/patent/intro/intro_03/group_01/index.html).

48 한규현, 2026 년 법관연수강의자료-지식재산권 소송실무, 77 면.

특허 사건과 관련한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법관의 이해와 판단을 돕기 위하여 2016. 1. 11.부터 법원 기술조사관 제도를 도입하였다.<sup>49</sup> 기술조사관은 법관의 명을 받아 특허 재판에 필요한 연구·자료 수집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기술조사관도 기술심리관과 마찬가지로 기계, 전기, 화학, 약학, 전자통신 등 다양한 과학·기술 분야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받은 전문가들이다.<sup>50</sup>

조사관은 대법원 및 각급 법원에 사건의 심판에 필요한 자료 수집 조사등을 위하여 둘 수 있다.<sup>51</sup> 이에 따라 대법원(법원행정처)과 특허법원 및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술조사관이 배치되어 있다.

대법원의 기술조사관들은 지식재산권 전담조 재판연구관과 협업하여 상고사건의 기술조사를 수행한다. 간혹 기술조사가 필요한 다른조 재판연구관과 협업하는 경우도 있다.

특허법원에 소속된 기술조사관들은 주로 특허법원 재판부의 기술검토를 지원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속된 기술조사관들은 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 60, 61, 62, 63 부 및 서울고등법원 민사 제 4, 5 부의 지재전담 민사 재판업무를 지원한다. 그 외에도 서울중앙지방법원 및 서울고등법원의 지재권 침해 형사사건을 심리하는 형사재판부 및 지재쟁점이 포함된 행정사건을 심리하는 행정재판부 등에도 기술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나아가 특허법원 및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속된 기술조사관들이 타 법원 지재전담 재판부의 기술검토를 지원하기도 한다.

현재 대법원에는 기술조사서기관이 6 명 배치되어 있다. 특허법원에는 기술심리관과 기술조사관을 겸임하는 서기관 15 명, 기술심리관과 기술조사관을 겸임하는 사무관 2 명, 기술조사사무관 6 명이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는 기술조사서기관 3 명, 기술조사사무관 8 명이 근무하고 있다.

### 3. 재판연구원

재판연구원 제도는 전면적 법조일원화와 함께 2011. 7. 18.자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도입되었고,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이 배출된 첫 해인 2012 년부터 시행되었다.<sup>52</sup>

재판연구원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하는데, 소속 법원장의 명을 받아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조사·연구, 그 밖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sup>53</sup> 재판연구원의 임기는 3 년이다.<sup>54</sup>

---

49 특허법원 홈페이지, [https://patent.scourt.go.kr/patent/intro/intro\\_03/group\\_01/index.html](https://patent.scourt.go.kr/patent/intro/intro_03/group_01/index.html).

50 특허법원 홈페이지, [https://patent.scourt.go.kr/patent/intro/intro\\_03/group\\_01/index.html](https://patent.scourt.go.kr/patent/intro/intro_03/group_01/index.html).

51 법원조직법 제 54 조의 3.

52 문선주 외, 재판연구원 제도의 바람직한 운영방안, 사법정책연구원, 2020, 3 면.

53 법원조직법 제 53 조의 2 제 2 항.

54 법원조직법 제 53 조의 2 제 5 항.

서울고등법원 지재전담부(민사 제 4, 5 부)에는 총 5 명의 재판연구원이 소속되어 있다.

특허법원에는 2026 년 현재 총 5 명의 재판연구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5 개 재판부에 각각 소속되어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지재전담부에는 재판연구원이 배치되어 있지 않지만, 지재 전담 형사부(단독)에는 재판연구원이 배치되어 있다.

#### 4. 특허법원 국제지식재산권법연구센터

특허법원 국제지식재산권법연구센터는 지식재산 전문법원으로서 특허법원의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국내외 학술교류업무와 국제업무를 지속적,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2017 년 5 월 설립된 기관이다.<sup>55</sup>

특허법원 국제지식재산권법연구센터는 지식재산권 소송과 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 지식재산 재판제도와 주요 국가의 법제와 판례, 제도 운영과 비교·분석하여 보다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sup>56</sup>

국제지식재산권법연구센터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 1) 지식재산권 관련 비교법적 연구를 수행

국제지식재산권법연구센터는 지식재산권 소송과 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를 수행한다. 이에 우리나라 지식재산 재판제도와 실무를 주요 국가의 법제와 판례, 제도 운영과 비교·분석하여 다양한 연구보고서를 출간한 바 있다.

##### 2) 특허법원의 국제화와 전문화 지원

국제지식재산권법연구센터는 최근 실제 재판에서 검토가 필요한 비교법적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 소송당사자는 물론 국민들이 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하여 예측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특허법원 민사항소심/심결취소소송 표준심리절차’를 전면개정한 바 있다.

##### 3) 영문 판례집 출간 및 WIPO 와의 유기적 협력관계 구축

국제지식재산권법연구센터는 2017 년 개원한 이래로 매년 특허법원에서 내려진 중요한 판결을 선별하여 ‘IP High Court Decisions’를 출간해오고 있으며, 2023 년부터는 주요한 판례만을 따로 묶어 ‘Leading Case Summaries’를 출간하고 있다.

##### 4) 지식재산권 관련 국내외 학술교류

---

55 특허법원 홈페이지, [https://patent.scourt.go.kr/patent/intro/intro\\_03/group\\_01/index.html](https://patent.scourt.go.kr/patent/intro/intro_03/group_01/index.html).

56 특허법원 소개책자 자료(안).

국제지식재산권법연구센터는 매년 국내외 판사 및 법률전문가들을 초청하여 개최하는 ‘국제 특허법원 콘퍼런스’를 내실있고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현재 지식재산권법을 전공한 박사급 연구원 2명과 통번역·국제업무를 수행하는 1 명의 연구원이 근무하고 있다. 또한 비상임연구위원, 방문 연구위원, 방문 연구원 제도를 운영함에 따라 국내외 주요 연구기관과 공동연구 및 연구협력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 3. 지식재산권 분쟁해결절차(Procedure for IP disputes)

#### 3.1. 행정기관의 최종결정에 대한 사법심사 (Judicial review of administrative final decisions)

지식재산처 산하 특허심판원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한다. 여기에는 지식재산처 심사관의 거절결정 불복심판, 무효심판 또는 권리범위확인심판, 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 심판이 포함된다.<sup>57</sup> 특허심판원 심결 취소를 위한 사법절차는 특허법원의 전속 관할에 속한다.<sup>58</sup>

특허심판원의 심결결정에 대한 소는 아래와 같은 성격을 갖는다.<sup>59</sup>

- 사법작용 내지 사법절차

- 1) 이는 행정작용이 아닌 사법작용이다. 즉 특허심판원 등의 행정작용에 대한 사법적 통제(적법성 판단)를 하는 사법작용이다.
- 2) 이는 행정심판절차가 아닌 사법절차이다. 법원이 대립당사자주의와 변론주의에 입각하여 진행하는 사법절차이다.

- 행정소송

- 1)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  
이는 특허심판원의 ‘심결’이라는 행정청의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이다.
- 2) 특허법원 관할의 특수한 행정소송  
심결취소소송은 특허법 등의 규정에 따라 그 대상 및 관할을 한정하고 있다.<sup>60</sup>
- 3) 심판과 심급 관계 : 아무런 심급관계가 없음

---

57 <https://www.wipo.int/en/web/wipolex/judicial-administration-structure/kr>. (WIPO 홈페이지)

58 <https://www.wipo.int/en/web/wipolex/judicial-administration-structure/kr>. (WIPO 홈페이지)

59 한규현, 2026 년 법관연수강의자료-지식재산권 소송실무, 82-83 면.

60 특허법 제 186 조 등.

이는 특허심판원 심판의 항소심 또는 속심절차가 아니다. 심판절차에서 한 주장이나 제출한 자료를 소송에서 원용할 수 없다. 소송절차에서 별도의 주장과 자료 제출이 필요하다.

대법원은 특허법원 판결에 대한 상고사건을 담당한다.<sup>61</sup>

그 밖에 지리적표시심판위원회에서는 지리적표시에 관한 심판 및 재심 등을 담당하고 있다.<sup>62</sup> 아울러 품종보호심판위원회는 품종보호 출원을 신청한 사람의 ‘국립종자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를 해결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는데, 심사관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사람은 품종보호심판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sup>63</sup> 이에 대한 불복은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이다.

또한, 무역위원회의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판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sup>64</sup> 이에 대한 불복은 서울행정법원에 하고, 다시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 <심결취소소송 심리절차>

#### 1. 소장제출과 서면공방

당사자는 심결의 위법사유에 대해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을 통해 주장하고 이를 입증할 증거를 제출한다. 원고가 제출하는 소장은 심결의 절차와 요지, 위법사유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sup>65</sup> 피고는 원고로부터 구체적 청구원인이 기재된 소장 또는 준비서면을 송달받은 때로부터 3 주 이내에 준비명령에 따라 해당 내용을 충실히 작성하여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sup>66</sup> 당사자가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공증받은 소송위임장’ 및 이에 대한 ‘아포스티유 확인서’ 등 위임장의 형식적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sup>67</sup>

#### 2. 변론준비

당사자 사이에 서면 공방이 끝나면, 재판장은 변론기일을 지정하거나 절차진행에 관한 협의를 위해 변론준비절차를 진행한다. 당사자는 주장 및 증거의 제출방법, 변론기일 희망일시, 실체적 쟁점의 정리 및 특정 등과 관련하여 자발적으로 절차협의를 진행할 수 있다.<sup>68</sup> 아울러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원이 주재하는 절차협의를 진행할 수 있다.<sup>69</sup>

#### 3. 변론기일

---

61 법원조직법 제 14 조.

6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 42 조.

63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 90 조.

64 서울행정법원 2007. 8. 14. 선고 2007 구합 825 판결.

65 특허법원 심결취소소송 표준심리절차(국영문 통합본, 2025. 11. 7. 전부개정) 77 면.

66 특허법원 심결취소소송 표준심리절차(국영문 통합본, 2025. 11. 7. 전부개정) 78 면.

67 특허법원 심결취소소송 표준심리절차(국영문 통합본, 2025. 11. 7. 전부개정) 78 면.

68 특허법원 심결취소소송 표준심리절차(국영문 통합본, 2025. 11. 7. 전부개정) 80 면.

69 특허법원 심결취소소송 표준심리절차(국영문 통합본, 2025. 11. 7. 전부개정) 80-81 면.

법원은 제출된 소장에 기재된 쟁점을 중심으로 변론이 집중되도록 함으로써 변론이 가능한 속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당사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민사소송규칙 제 127 조의 3).<sup>70</sup> 구술변론을 위한 변론자료 및 설명자료는 변론기일 전날 업무시간 종료(18:00) 전까지 제출하고, 출력본은 변론기일 당일에 제출하여야 한다.<sup>71</sup>

## 3.2. 민사절차(Civil proceedings)

### 1. 임시조치 (Provisional Measure)

#### <침해금지 가처분>

특허권 침해금지가처분은 특허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에게 금지청구권에 기한 본안판결에서 명하게 될 침해금지의 부작위의무를 미리 부과하는 점에서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에 속한다.<sup>72</sup>

특허법 제 126 조는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고,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그 밖에 침해의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침해금지 또는 예방 청구는 본안 소송 외에 가처분으로 구할 수 있다.<sup>73</sup> 상표법에서는 제 107 조, 디자인보호법에서는 제 113 조에서 금지청구권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특허권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는 관할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소재지의 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 소재지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하되,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중복관할을 인정한다.<sup>74</sup> 가처분 사건에 대해서는 관할집중 법률이 입법되어 있지 않지만, 본안의 관할법원은 가처분의 재판 관할도 가지므로 특허권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가처분이 사실상 각 고등법원 소재지의 지방법원으로 집중될 수 있고 그 가운데에서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다수 제기되고 있다.

### 2. 사건 관리

법원은 사건 초기에 절차협의를 할 사건, 바로 변론기일을 지정할 사건, 조기 조정절차에 회부할 사건 등으로 분류한 다음, 절차협의를 할 사건에 관하여는 절차협의를 진행한다.<sup>75</sup>

70 특허법원 심결취소소송 표준심리절차(국영문 통합본, 2025. 11. 7. 전부개정) 83 면.

71 특허법원 심결취소소송 표준심리절차(국영문 통합본, 2025. 11. 7. 전부개정) 83 면.

72 특허법원 지적재산소송 실무연구회, 지적재산소송실무 제 4 판, 2019, 508 면.

73 특허법원 지적재산소송 실무연구회, 지적재산소송실무 제 4 판, 2019, 483 면.

74 민사소송법 제 24 조 제 2 항 및 제 3 항.

75 한규현, 2026 년 법관연수강의자료-지식재산권 소송실무, 149 면.

절차협의를 기일을 통하여 할 수도 있고,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음성의 송수신 또는 화상회의를 통해 할 수도 있다. 전자의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협의된 내용을 고지하고 준비기일 조서에 그 고지 내용을 기재한다. 후자의 경우에는 협의된 내용을 준비명령 등의 형식을 통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한다.<sup>76</sup> 법원은 효율적인 절차진행을 위하여 당사자 사이에 자발적 절차협의를 하도록 권고할 수도 있다.<sup>77</sup>

재판장은 사건의 특성상 절차협의를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바로 변론기일을 지정한다.<sup>78</sup>

서울중앙지방법원 지재전담부에서는 착오 배당에 의한 절차 지연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사건명에 지식재산권 사건임을 명확히 밝히도록 안내하고 있다.<sup>79</sup> 아울러 사건명에는 침해된 지식재산권의 종류와 당사자가 구하는 구제방법을 명확히 기재하도록 안내하고 있다.<sup>80</sup> 또한 사건관리를 위하여 심리 초기에 변론기일 일자 및 횟수, 각 기일별 진행사항, 주장 및 증거의 제출기간 등 절차 진행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는 화상회의를 권장하고 있다.<sup>81</sup>

### 3. 심리(Hearing)

#### <지식재산권에 관한 민사소송 심리절차>

##### 1) 사건접수

항소심의 경우 항소인은 법원으로부터 항소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40 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sup>82</sup> 항소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는 경우, 법원은 적법한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소를 각하할 수 있다.<sup>83</sup>

##### 2) 변론준비

변론준비절차에서는 변론이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여야 한다.<sup>84</sup> 재판장 등은 변론준비절차에서 쟁점과 증거의 정리, 그 밖에

---

76 한규현, 2026 년 법관연수강의자료-지식재산권 소송실무, 150 면.

77 한규현, 2026 년 법관연수강의자료-지식재산권 소송실무, 150 면.

78 특허법원 민사항소심 표준심리절차(국영문통합본), 7 면.

[https://file.scourt.go.kr/dcboard/1763077726245\\_084846.pdf](https://file.scourt.go.kr/dcboard/1763077726245_084846.pdf).

79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지식재산 전담재판부 소송절차 안내, 2020.1.6 개정, 1 면.

80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지식재산 전담재판부 소송절차 안내, 2020.1.6 개정, 1 면.

81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지식재산 전담재판부 소송절차 안내, 2020.1.6 개정, 4 면.

82 특허법원 민사항소심 표준심리절차(국영문 통합본, 2025. 7. 11. 전부개정), 3 면.

83 특허법원 민사항소심 표준심리절차(국영문 통합본, 2025. 7. 11. 전부개정), 4 면.

84 민사소송법 제 279 조.

효율적이고 신속한 변론진행을 위한 준비가 완료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당사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sup>85</sup>

항소이유서에 대한 실질적인 주장이 담긴 답변서가 제출되면, 재판장은 변론준비절차를 진행할 사건, 바로 변론기일을 진행할 사건, 조기 조정절차에 회부할 사건 등으로 분류한다.<sup>86</sup>

소송당사자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준비서면의 제출횟수 및 기간, 변론기일의 희망기일 등에 관해 자발적으로 협의하고, 법원은 소송당사자의 협의결과를 바탕으로 변론기일을 신속히 지정하고 심리를 진행한다.

### 3) 변론기일

법원은 제출된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쟁점을 중심으로 변론이 집중되도록 함으로써 변론이 가능한 한 속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당사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민사소송규칙 제 127 조의 3).

## 4. 병행 심리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 동일한 특허권등에 관한 심결취소소송과 침해소송이 동일한 재판부에 계속되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양 사건을 병행하여 심리한다.<sup>87</sup>

심결취소소송과 침해소송에서의 관련 주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경우에는 변론준비절차를 병행하여 진행할 수 있다.<sup>88</sup>

지식재산권의 등록번호가 동일한 관련사건은 동일한 재판부에 배당되는 것이 원칙이고, 당사자가 동일하고 출원 또는 등록된 지식재산권의 내용 이 동일·유사한 관련사건이 서로 다른 재판부에 배당된 경우 재배당절차를 통해 동일한 재판부에 배당될 수 있다(구체적 절차는 ‘특허법원의 사건배당에 관한 내규’에 따름). 당사자는 관련사건이 서로 다른 재판부에 배당되거나 계속 중인 경우 그러한 사정을 재판부에 알려야 한다.<sup>89</sup>

## 5. 증거

### <증거조사>

---

85 민사소송규칙 제 70 조 제 1 항.

86 특허법원 민사항소심 표준심리절차(국영문 통합본, 2025. 7. 11. 전부개정), 4 면

87 특허법원 민사항소심 표준심리절차(국영문 통합본, 2025. 7. 11. 전부개정), 10 면.

88 특허법원 민사항소심 표준심리절차(국영문 통합본, 2025. 7. 11. 전부개정), 10 면.

89 특허법원 민사항소심 표준심리절차(국영문 통합본), 10 면.

[https://file.scourt.go.kr/dcboard/1763077726245\\_084846.pdf](https://file.scourt.go.kr/dcboard/1763077726245_084846.pdf)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를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sup>90</sup>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에 의하여 심증을 얻을 수 없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sup>91</sup>

1 심에서 채택되어 조사된 증거와 입증취지가 동일·유사한 증거, 1 심에서 신청하였으나 채택되지 않거나 철회한 증거를 재신청하는 경우 신청 당사자는 그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야 한다.<sup>92</sup>

재판부는 필요한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침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계산을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고,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전문가 증인의 신문, 침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계산을 위한 감정 등의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 <문서제출명령>

문서제출명령이란 문서제출의무를 부담하는 문서소지자(당사자 또는 제 3 자)에 대하여 그 문서의 제출을 명하는 법원의 재판을 말한다.<sup>93</sup>

상대방 당사자(원고 또는 피고) 또는 제 3 자에 대한 문서제출신청은 문서의 표시와 취지, 문서를 가진 사람, 증명할 사실, 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의무의 원인을 밝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sup>94</sup>

### <자료제출명령>

#### 1) 특허

특허법 제 132 조에 따르면 법원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 당사자에게 해당 침해의 증명 또는 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자료의 소지자가 그 자료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sup>95</sup>

법원은 당사자가 특허법 제 132 조 1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구체적 행위의 내용·방식·형태를 제시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그 당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sup>96</sup>

또한, 특허법 제 126 조의 2 에서는 구체적 행위의 내용·방식·형태 제시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소송에서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

90 민사소송법 제 290 조.

91 민사소송법 제 292 조.

92 민사소송규칙 제 127 조의 4 제 2 항.

93 한규현, 2026 년 법관연수강의자료-지식재산권 소송실무, 168 면, 민사소송법 제 346 조.

94 민사소송법 제 345 조.

95 특허법 제 132 조 제 1 항.

96 특허법 제 132 조 제 2 항.

주장하는 침해행위의 구체적 내용·방식·형태를 부인하는 당사자는 자기의 구체적 행위의 내용·방식·형태를 제시하여야 한다.<sup>97</sup> 법원은 당사자가 자기의 구체적 행위의 내용·방식·형태를 제시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그 당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sup>98</sup>

## 2) 상표, 디자인, 부정경쟁

상표권 침해에 관한 소송, 디자인권 침해에 관한 소송, 부정경쟁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한 영업상 이익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 당해 침해행위로 인하여 손해의 계산을 하는데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서류의 소지자가 그 서류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sup>99</sup>

### <비공개 심리절차(in camera proceeding)>

재판장은 제출거부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를 심리하기 위한 비공개 심리절차가 필요한 경우 피신청인(자료소지인)에게 신청인 측이 그 절차에 참여하는 것에 동의하는지를 확인한다. 신청인 측 참여에 대한 동의가 없는 경우 재판장은 피신청인으로부터 심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심리하되, 필요한 경우 피신청인에게 자료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sup>100</sup>

피신청인이 신청인 측의 비공개 심리절차 참여에 동의하는 경우, 재판장은 준비명령을 하여,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거나 또는 변론준비기일을 열어 쌍방이 참여하는 비공개 심리절차를 준비한다.<sup>101</sup>

### <열람범위지정>

법원은 제출 대상 자료에 영업비밀이 포함된 경우 제출명령의 목적 내에서 열람할 수 있는 범위 또는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sup>102</sup>

### <비밀유지명령>

---

97 특허법 제 126 조의 2.

98 특허법 제 126 조의 2.

99 상표법 제 114 조, 디자인보호법 제 118 조, 부정경쟁방지법 제 14 조의 3; 한규현, 2026 년 법관연수강의자료-지식재산권 소송실무, 171 면.

100 특허법원 민사항소심 표준심리절차(국영문 통합본), 15 면.  
[https://file.scourt.go.kr/dcboard/1763077726245\\_084846.pdf](https://file.scourt.go.kr/dcboard/1763077726245_084846.pdf).

101 특허법원 민사항소심 표준심리절차(국영문 통합본), 15 면.  
[https://file.scourt.go.kr/dcboard/1763077726245\\_084846.pdf](https://file.scourt.go.kr/dcboard/1763077726245_084846.pdf).

102 특허법 제 132 조 제 3 항.

열람범위지정이 있을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특허법 제 224 조의 3 (비밀유지명령) 제 1 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결정으로 위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sup>103</sup>

### <국제재판>

국제재판부는 외국인 당사자의 언어적 어려움을 경감하여 특허법원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서 전문법원이 국제적인 IP 소송환경에서 외국 당사자에 의해 보다 선호되는 법정지로 활용될 수 있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 법원이 Global IP Hub Court 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마련된 바 있다.<sup>104</sup> 국제재판의 신청 및 동의는 제 1 심과 항소심의 각 제 1 회 변론기일 전에 서면으로 이루어지는데, 1 회 변론기일 이후의 신청 및 동의에 대해서도 그 필요성이 현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제재판 신청을 허가할 수 있다.<sup>105</sup>

국제사건은 아래와 같은 절차적 특징이 있다.

- 1) 당사자는 변론의 일부 또는 전부를 허가된 외국어로 진행할 수 있다.
- 2) 법원은 허가된 외국어와 국어 사이의 통역을 제공한다.
- 3) 허가된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에는 번역문을 붙이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은 소송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현저히 필요한 경우 번역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 4) 법원은 국어로 판결문을 작성하여 선고하고, 판결문 정본 송달 후 당사자에게 허가된 외국어로 번역된 판결문을 추가로 송부한다.

### <영상재판>

아울러 각급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영상재판허가가 이루어진 사건의 소송관계인(변호사, 당사자, 증인 등)은 영상재판을 통해 재판에 참여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전국 법원 최초로 영상재판 전용법정을 설치한 바 있다.<sup>106</sup> 아울러 국제재판에서도 영상재판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 최근 특허법원 2 부에서는 국외에 소재하여 출석이 어려운 당사자가 영상재판의 형태로 절차에 참가하여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고, 법정의 심리과정을 공개했던 바 있다.<sup>107</sup>

---

103 특허법원 민사항소심 표준심리절차(국영문 통합본), 16 면.

[https://file.scourt.go.kr/dcboard/1763077726245\\_084846.pdf](https://file.scourt.go.kr/dcboard/1763077726245_084846.pdf).

104 [https://patent.scourt.go.kr/patent/intro/intro\\_09/index.html](https://patent.scourt.go.kr/patent/intro/intro_09/index.html).

105 [https://patent.scourt.go.kr/patent/intro/intro\\_09/index.html](https://patent.scourt.go.kr/patent/intro/intro_09/index.html).

106 <https://seoul.scourt.go.kr/dcboard/new/DcNewsViewAction.work?seqnum=11814&gubun=41>.

107 특허법원 2 부(재판장 고법판사 이혜진, 고법판사 박은희, 판사 권원명), 국제재판(24 허 14780 등)

경과보고(2025.10.2.)

## 6. 구제

### (1) 침해금지청구

#### 1) 특허법

특허법 제 126 조 제 1 항은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 2) 상표법

상표법 제 107 조 제 1 항은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 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부경법 제 4 조 제 1 항은 부정경쟁행위나 제 3 조의 2 제 1 항 또는 제 2 항을 위반하는 행위로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는 부정경쟁행위나 제 3 조의 2 제 1 항 또는 제 2 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 4) 디자인보호법

디자인보호법 제 113 조 제 1 항은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 (2) 손해배상

지식재산권 침해는 민법상의 불법행위로서, 그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일종이다.<sup>108</sup>

지식재산권 침해가 성립되는 경우 손해는 소극적 손해(일실이익), 적극적 손해, 위자료로 나뉜다.<sup>109</sup>

---

108 한규현, 2026 년 법관연수강의자료-지식재산권 소송실무, 274 면.

109 한규현, 2026 년 법관연수강의자료-지식재산권 소송실무, 275 면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자기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sup>110</sup>

손해액 산정과 관련하여서는 침해물건의 양도수량에 기초한 손해액 산정(제 128 조 제 2 항), 침해자의 이익액을 손해액으로 추정(제 128 조 제 4 항), 합리적 실시료에 기초한 손해액 산정(제 128 조 제 5 항), 상당한 손해액의 인정(제 128 조 제 6 항), 증액배상의 인정(제 128 조 제 7, 8 항)이 있다.

아울러 상표권 침해에 대한 손해액 추정과 관련하여서는 상표법 제 110 조,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 산정과 관련하여서는 저작권법 제 125 조, 제 126 조 등을 참고해볼 수 있다.

### (3) 기타 구제책

#### 1) 신용회복

특허법 제 131 조에 의하면 법원은 고의나 과실로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함으로써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업무상 신용을 떨어뜨린 자에 대해서는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갈음하여 또는 손해배상과 함께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업무상 신용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표법에서는 제 113 조에서 해당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디자인보호법에서는 제 117 조에서 해당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 2) 처분 또는 폐기

특허법 제 126 조 제 2 항에 의하면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제 1 항에 따른 청구를 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침해행위로 생긴 물건을 포함한다)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그 밖에 침해의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표법 제 107 조 제 2 항, 디자인보호법 제 113 조 제 3 항에서도 해당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 3) 부당이득반환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를 지니고 있는 자는 법적인 권한이 없는 자가 이익을 얻어 권리자에게 손해를 미친 경우 이에 대해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가령, 특허법에 부당이득반환과 관련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특허권 침해가 민법 제 741 조<sup>111</sup> 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즉 (1) 타인의 특허권 실시로 이익을 얻을 것, (2) 특허권자 등에게 손실이 발생하였을 것, (3) 이익과 손실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

---

<sup>110</sup> 특허법 제 128 조 제 1 항.

<sup>111</sup> 민법 제 741 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4) 이익의 보유를 정당화하는 법률상 이익이 없을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침해자가 특허권 실시로 얻은 이익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특허권자 등은 침해자에 대하여 그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sup>112</sup>

#### 4) 증액배상제도

지식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해 지식재산 관련 법률에는 증액배상제도가 도입되어 있다.

증액배상제도가 최초로 도입된 법률은 특허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이다.

이후 상표법과 디자인보호법에서도 상표권이나 디자인권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기존에 최대 3 배의 증액배상을 정하고 있던 조항을 5 배로 상향 조정하였다.<sup>113</sup> 아울러 저작권법의 경우에도 5 배 증액배상이 2026 년 8 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sup>114</sup> 이와 같이 각종 지재산 침해에 도입된 5 배 증액배상제도는 미국, 일본 등 해외 주요국과 비교하더라도 가장 높은 수준에 해당한다.<sup>115</sup> 이에 따라 법원은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 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는데, 이의 판단을 위해서는 고의의 인식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sup>116</sup>

#### 5) 산업기술의 보호

산업기술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보호방안의 마련을 위해 대한민국에서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두고 있다.<sup>117</sup>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경우 기업의 영업비밀이 침해된 경우 사후적 처벌을 한다는 한계를 지니나, 산업기술 보호법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분야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sup>118</sup>

#### 6) K-디스커버리

대한민국에서는 기술탈취와 영업비밀 침해 사건에서 증거 확보가 어려웠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K-디스커버리)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여기에는 특허법의 일부 개정을 통해 침해의 증명 또는 침해로 인한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증거 등을 전문가로 하여금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소송에 필요한 증거를 미리 보존할 수 있도록 하며, 침해소송에서의 비밀유지의무를 강화, 보완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다.<sup>119</sup>

또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2028. 2. 20. 시행 예정, 법률 21377 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12 특허법원 지적재산소송 실무연구회, 지적재산소송실무 제 4 판, 2019, 606 면.

113 상표법, 디자인보호법(2025. 7. 22. 시행).

114 저작권법(2026. 8. 11. 시행).

115 지식재산처 보도자료, <https://www.kipo.go.kr/ko/kpoBultnDetail.do?ntatcSeq=20573&aprchId=BUT0000029>.

116 김영기, 2026 년 법관연수, 지식재산권 소송실무, 42 면 이하.

117 김종근 외, 기술 유출 범죄의 심리방식과 양형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2025, 14 면.

118 김종근 외, 위 자료, 18-19 면.

119 국가지식재산위원회, 한국형 디스커버리 관련 동향 참고자료, 2025, 10 면 이하.

- 계약 성립 이전 단계의 기술탈취 문제를 해결하고 수탁기업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기술보호 범위를 수탁·위탁거래 계약 체결 전 단계까지 확대(제 25 조제 2 항),
- 법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였으며(제 40 조제 5 항 신설)
- 기술자료 유용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를 도입하고, 법원은 영업비밀 등에 대한 비밀유지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제 40 조의 6 부터 제 40 조의 10 까지 신설)
- 기술자료 유용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되거나 제기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법원은 자료보전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제 40 조의 11 신설)
- 기술자료 유용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은 위반행위의 존재 여부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과 관련된 사실이나 자료의 검증에 필요한 사람을 당사자가 직접 신문하게 할 수 있도록 함(제 40 조의 12 신설)

### 3.3.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형사절차(Criminal infringement proceedings)

특허·상표·디자인·저작권 침해 중 일정한 행위는 각 개별법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 절차는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에 따른다. 가령,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sup>120</sup>

형사소송에 대한 구제책과 관련한 법적 조항은 특허법 제 12 장<sup>121</sup>, 상표법 제 12 장<sup>122</sup>, 디자인보호법 제 11 장<sup>123</sup>, 저작권법 제 11 장<sup>124</sup>,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 18 조 이하<sup>125</sup>에 명시되어 있다.

지식재산권 침해와 관련한 형사사건의 소송절차는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상 일반 형사절차에 따른다. 형사사건의 토지관할은 형사소송법 제 4 조 제 1 항에 따라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를 기준으로 정해진다. 공소제기는 검사가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sup>126</sup> 다만 특허권 등에 대한 일부 침해죄는 친고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sup>127</sup>

### 3.4. 간이절차(Simplified procedures)

120 상표법 제 230 조.

121 <https://www.law.go.kr/%EB%B2%95%EB%A0%B9/%ED%8A%B9%ED%97%88%EB%B2%95>.

122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3%81%ED%91%9C%EB%B2%95/\(20251111,21134,20251111\)/%EC%A0%9C53%EC%A1%B0](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3%81%ED%91%9C%EB%B2%95/(20251111,21134,20251111)/%EC%A0%9C53%EC%A1%B0).

123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94%94%EC%9E%90%EC%9D%B8%EB%B3%B4%ED%98%B8%EB%B2%95>.

124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0%80%EC%9E%91%EA%B6%8C%EB%B2%95>.

125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dl\\_lawinfosearch&target=law&MST=277201&type=HTML&mobileYn=&efYd=2025100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dl_lawinfosearch&target=law&MST=277201&type=HTML&mobileYn=&efYd=20251001).

126 형사소송법 제 254 조.

127 특허법 제 225 조.

대한민국 법원에는 지식재산권 관련 사건만을 위한 별도의 독립된 간이절차가 일반화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일반 민사사건상 소액사건심판을 통해 신속한 권리보호를 도모하고 있다.

일반 민사사건상 소액사건은 소송목적의 값이 3,000 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을 대상으로 하며,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1 회회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고 즉시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sup>128</sup> 다만,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일단 피고에게 이행권고 결정등본을 송달한 후 이의가 있을 경우에만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재판을 진행하게 된다.<sup>129</sup>

### 3.5.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특허법원은 지식재산권에 관한 민사소송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하여 지식재산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정위원회를 두고 있다. 지식재산권 소송 분야의 법률 전문가 및 과학기술 분야의 전문가 30 여 명을 조정위원으로 위촉하여 조정업무를 맡기고 있다.<sup>130</sup>

지식재산처에서는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산업재산권·직무발명·영업비밀·부정경쟁행위·반도체배치설계권 등 관련 분쟁이 있을 경우, 심판·소송에 소요되는 비용·시간을 절약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처가 설치한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양 당사자를 문제해결절차에 직접 참가시켜 상호 간의 합의를 유도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이다.<sup>131</sup>

지식재산분야 법원-조정 연계제도도 운영되고 있다. 동 제도와 관련해서는 2024 년 10 월에 시행 법원이 서울, 수원, 대전지방법원까지 확대되었다.<sup>132</sup> 이에 따라 대전지방법원에서 지식재산 전문성이 필요하고, 조정으로 해결하는 것이 적합한 사건을 지식재산처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로 연계하면,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에서 해당 분야에 가장 적합한 전문가로 3 인 이내의 조정부부를 구성해 조정절차를 진행하게 된다.<sup>133</sup>

그 밖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국저작권위원회’와 연계하여 저작권 사건의 원만한 해결에도 힘쓰고 있다.<sup>134</sup>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는 조정을 통해 저작권 분쟁 당사자의 합의를 유도함으로써 분쟁 당사자가 분쟁에서 신속하게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sup>135</sup>

---

128 대한민국법원 전자소송포털> 사건유형별 절차안내. <https://ecfs.scourt.go.kr/psp/index.on?m=PSP730M10>, 소액사건심판법 제 2 조 제 1 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 1 조의 2.

129 대한민국법원 전자소송포털> 사건유형별 절차안내. <https://ecfs.scourt.go.kr/psp/index.on?m=PSP730M10>, 소액사건심판법 제 5 조의 4.

130 특허법원 소개책자(구버전) 9 면.

131 지식재산처 홈페이지, <https://www.kipo.go.kr/ko/kpoContentView.do?menuCd=SCD0200345>.

132 지식재산처 보도자료, <https://www.kipo.go.kr/ko/kpoBultnDetail.do?ntatcSeq=20361&aprchId=BUT0000029>.

133 지식재산처 보도자료, <https://www.kipo.go.kr/ko/kpoBultnDetail.do?ntatcSeq=20361&aprchId=BUT0000029>.

134 [https://seoul.scourt.go.kr/seoul/info\\_01.jsp#](https://seoul.scourt.go.kr/seoul/info_01.jsp#).

135 한국저작권위원회, <https://www.copyright.or.kr/business/mediation/adjustment/index.do>.

## 4. 절차법의 법원(Sources of procedural law)

### [주요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

- 특허법(2025.11.11.시행)<sup>136</sup>
- 상표법(2025.11.11.시행)<sup>137</sup>
- 디자인보호법(2025.11.28. 시행)<sup>138</sup>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25.10.1. 시행)<sup>139</sup>
- 저작권법(2025.9.26. 시행)<sup>140</sup>
- 지식재산기본법(2022.12.11. 시행)<sup>141</sup>
- 국제사법(2022.7.5. 시행)<sup>142</sup>
- 발명진흥법(2025.10.1. 시행)<sup>143</sup>
- 실용신안법(2025.10.1. 시행)<sup>144</sup>
- 식물신품종 보호법(2025.10.1. 시행)<sup>145</sup>
- 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 관한 법률(2025.10.1. 시행)<sup>146</sup>
- 산업기술유출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25.10.1. 시행)<sup>147</sup>
-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2024.7.10. 시행)<sup>148</sup>

136

<https://www.law.go.kr/LSW//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D%8A%B9%ED%97%88%EB%B2%95#undefined>.

137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3%81%ED%91%9C%EB%B2%95/\(20251111,21134,20251111\)/%EC%A0%9C53%EC%A1%B0](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3%81%ED%91%9C%EB%B2%95/(20251111,21134,20251111)/%EC%A0%9C53%EC%A1%B0).

138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94%94%EC%9E%90%EC%9D%B8%EB%B3%B4%ED%98%B8%EB%B2%95>.

139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dl\\_lawinfosearch&target=law&MST=277201&type=HTML&mobileYn=&efYd=2025100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dl_lawinfosearch&target=law&MST=277201&type=HTML&mobileYn=&efYd=20251001).

140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0%80%EC%9E%91%EA%B6%8C%EB%B2%95>.

141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dl\\_lawinfosearch&target=law&MST=242919&type=HTML&mobileYn=&efYd=2022121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dl_lawinfosearch&target=law&MST=242919&type=HTML&mobileYn=&efYd=20221211).

142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dl\\_lawinfosearch&target=law&MST=238791&type=HTML&mobileYn=&efYd=2022070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dl_lawinfosearch&target=law&MST=238791&type=HTML&mobileYn=&efYd=20220705).

143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dl\\_lawinfosearch&target=law&MST=277197&type=HTML&mobileYn=&efYd=2025100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dl_lawinfosearch&target=law&MST=277197&type=HTML&mobileYn=&efYd=20251001).

144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B%A4%EC%9A%A9%EC%8B%A0%EC%95%88%EB%B2%95>.

145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dl\\_lawinfosearch&target=law&MST=276445&type=HTML&mobileYn=&efYd=2025100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dl_lawinfosearch&target=law&MST=276445&type=HTML&mobileYn=&efYd=20251001).

146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B0%98%EB%8F%84%EC%B2%B4%EC%A7%91%EC%A0%81%ED%9A%8C%EB%A1%9C%EC%9D%98%EB%B0%B0%EC%B9%98%EC%84%A4%EA%B3%84%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

147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2%B0%EC%97%85%EA%B8%B0%EC%88%A0%EC%9D%98%EC%9C%A0%EC%B6%9C%EB%B0%A9%EC%A7%80%EB%B0%8F%EB%B3%B4%ED%98%B8%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

148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dl\\_lawinfosearch&target=law&MST=258443&type=HTML&mobileYn=&efYd=20240710](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dl_lawinfosearch&target=law&MST=258443&type=HTML&mobileYn=&efYd=20240710).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2026.1.2. 시행)<sup>149</sup>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21.12.30. 시행)<sup>150</sup>
- 법원조직법(2026.3.12. 시행)<sup>151</sup>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2026.3.17. 시행)<sup>152</sup>

### [지식재산권 분쟁의 주요 절차법]

- 민사소송법(2025.7.12. 시행)<sup>153</sup>
- 민사집행법(2026.2.1. 시행)<sup>154</sup>
- 민사소송규칙(2026.3.1. 시행)<sup>155</sup>
- 행정소송법(2017.7.26.시행)<sup>156</sup>

###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한 절차 지침 및 법원 규칙]

- 특허법원 민사항소심/심결취소소송 표준심리절차<sup>157</sup>
- 서울중앙지방법원 지식재산 전담재판부 소송절차 안내<sup>158</sup>
- 대구지방법원 제 12 민사부(지적재산권 등 전담부) 표준심리절차<sup>159</sup>

## 5. 지식재산권 사건 통계(IP case statistics)

149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C%80%E3%86%8D%EC%A4%91%EC%86%8C%EA%B8%B0%EC%97%85%EC%83%81%EC%83%9D%ED%98%91%EB%A0%A5%EC%B4%89%EC%A7%84%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

150

<https://law.go.kr/lInfoP.do?lsiSeq=225127&lsId=001590&chrClsCd=010102&viewCls=lsRvsDocInfoR&ancYnChk=#>

151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dl\\_lawinfosearch&target=law&MST=284023&type=HTML&mobileYn=&efYd=2026031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dl_lawinfosearch&target=law&MST=284023&type=HTML&mobileYn=&efYd=20260312)

152

<https://portal.scourt.go.kr/pgp/main.on?w2xPath=PGP1021M04&jisCntntsSrno=2025000006226&rnum=2&pgDvs=1>

153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dl\\_lawinfosearch&target=law&MST=252393&type=HTML&mobileYn=&efYd=2025071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dl_lawinfosearch&target=law&MST=252393&type=HTML&mobileYn=&efYd=20250712)

154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AF%BC%EC%82%AC%EC%A7%91%ED%96%89%EB%B2%95>

155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dl\\_lawinfosearch&target=law&MST=283113&type=HTML&mobileYn=&efYd=2026030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dl_lawinfosearch&target=law&MST=283113&type=HTML&mobileYn=&efYd=20260301)

156

<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6%89%EC%A0%95%EC%86%8C%EC%86%A1%EB%B2%95>

157

[https://patent.scourt.go.kr/dcboard/new/DcNewsViewAction.work?seqnum=53&gubun=196&cbub\\_code=000700&searchWord=&pageIndex=1](https://patent.scourt.go.kr/dcboard/new/DcNewsViewAction.work?seqnum=53&gubun=196&cbub_code=000700&searchWord=&pageIndex=1)

158

[https://seoul.scourt.go.kr/seoul/info/Procedural\\_Guidelines\\_kor.pdf](https://seoul.scourt.go.kr/seoul/info/Procedural_Guidelines_kor.pdf)

159

<https://daegu.scourt.go.kr/common/util/commonBank.jsp?functionCode=3310>

특허법원 홈페이지 내 연도별 사건통계에 따르면 심결취소사건 접수 건수는 2021 년도부터 2023 년도까지 조금씩 줄다가, 2024 년도에 확대되었으나 다시 2025 년도에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sup>160</sup> 반면 . 민사항소사건 접수 건수는 2021 년부터 2025 년까지 대체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sup>161</sup>

특허법원의 경우 심결취소사건의 평균 처리기간은 2025 년 기준 294.4 일이며, 민사항소사건의 평균 처리기간은 2025 년 기준 406.2 일이다.<sup>162</sup>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경우 접수된 지식재산 사건이 2015 년 380 여 건에서 관할이 집중된 2016 년 520 여 건으로 증가하였고, 이후 점차 증가하여 2022 년부터는 연평균 1,100 여 건에 이르고 있다.<sup>163</sup>

---

160 [https://patent.scourt.go.kr/patent/news/news\\_07/index.html](https://patent.scourt.go.kr/patent/news/news_07/index.html).

161 [https://patent.scourt.go.kr/patent/news/news\\_07/index.html](https://patent.scourt.go.kr/patent/news/news_07/index.html).

162 [https://patent.scourt.go.kr/patent/news/news\\_07/index.html](https://patent.scourt.go.kr/patent/news/news_07/index.html).

163 [https://jeju.scourt.go.kr/seoul/info\\_01.jsp#](https://jeju.scourt.go.kr/seoul/info_01.jsp#).